

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 보호 교육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최근 일부 요양시설 및 주·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를 폭행·방임하는 등의 노인 학대사고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, 「노인복지법」 제6조의3(인권교육)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5조의3(인권교육)*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설치·운영자와 종사자가 **매년 4시간 이상(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) 인권교육****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
*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 2018년 9월 14일부터 인권교육 의무화

** 방법: 집합교육(인권교육기관), 방문교육(강사 방문), 인터넷교육(사이버교육센터)

< 인터넷 교육 안내 >

■ (주관)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

■ (신청경로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(in.kohi.or.kr) 접속 → 로그인(회원가입) → 하단의 '노인인권' 클릭 → 교육과정명 '노인인권, 한걸음 더 다가가다' 클릭 → 수강신청 클릭

* 「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사업안내」 p7~8 참고

** '22년부터 단일과정으로 변경 운영

■ (참고사항) 12월 초~중순 경 교육 종료 예정이므로, 가급적 상반기 내 수료 요망

따라서, 장기요양기관 대표자분들께서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 학대(신체적·정신적·성적·경제적 학대 및 방임 등) 및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교육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.

2023. 4.

국민건강보험공단